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의2서식] <개정 2018. 5. 1.>

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5일

신고인	상호명/선박연료공급업 등록번호	등록 항만명
	성명(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)
	주소 (전화번호:)	

	선명(차량번호)	톤수(적재량)	진수(進水)연월일 (제조일)	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 여부	소유 형태
장비추가 (선박/차량)					

변경 사유	
장비 상세	사업계획서 참조

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사업계획서 1부	수수료 없 음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 (신고인) → 접 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변경신고확인증 발급

(접수 ~ 결재: 처리기관: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·도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